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

제 목 : 학생선도부 운영 폐지에 관한 정책권고

주 문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전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하고, 고등학교 20개교의 '선도부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교원(교사)의 학생지도(교육)권을 학생에게 위임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학생에게 생활교육 및 별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각종 기구의 운영을 금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교원의 학생지도(교육)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학교생활규정은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선도부(명칭을 불문) 관련 조항도 폐지(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학교생활규정 준수 등의 필요한 활동은 홍보 및 캠페인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근거법령 부존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등 관련 조항은 교육목적상 학생의 지도와 훈육·훈계는 법령이나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장의 학생지도(교육)권에 속하는 업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교원)는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이므로, 학생지도권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등에 의해 교사(교원)에게만 있습니다.

즉, 교원의 학생 지도권한(교육권)을 학생자치기구(선도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교권 침해

학생지도(교육)권은 교권의 핵심내용으로 지도 대상인 학생(선도부)에게 법적 근거 없이 위임함으로써 교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교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에 위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제3조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 원



칙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권리영역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교육) 업무의 일부를 학생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학생선도부의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선도부가 등교지도, 교문지도, 식생활관 질서유지, 교내 순찰, 두발 및 복장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선도부 학생들의 학습권, 휴식권 등 인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선도부 이외의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침해사례도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선도부 운영으로 학생선도부와 비선도부 학생 사이에 갈등 관계가 상존하고 있는 바, 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관행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문제입니다.

결 론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2017. 7. 3.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임 송

